서울특별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□ 「서울특별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나,
- □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,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.
- □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, 이에 관한 규정 개선을 권고(2023.7.28.)한 바 있습니다.

□ 또한,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(10만원 →15만원. 설날·추석 20만원→30만원)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습니다. □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의 구성·운영 규정을 개선하고,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 □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. 「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」를 반영하 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- 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, 정당의 당원, 의원을 제외함(안 제22조)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정비(안 제24조) □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(별표1) 하고자 합니다. □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의회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모범을 보이고, 시민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도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 이에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